# 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 오피스텔 분양광고

청약Home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1.01.0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최초 분양광고일(2024.12.04.) 기준입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군별 1인당 1건, 총2건을 기준으로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동일군 내 2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제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 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 구 분 | 청약신청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
| 일 시 | 2024년 12월 9일(월) / 09:00~17:30 | 2024년 12월 12일(목) / 16:00 이후 | 2024년 12월 13일 (금) / 10:00~16:00 |
| 방 법 | 인터넷 청약 (09:00 ~ 17:30)<br>(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 청약Home 개별조회<br>(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분양홍보관 방문계약 |
| 장 소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 / - 스마트폰앱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 / - 스마트폰앱 | 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 분양홍보관<br>(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506)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구분 | 공동인증서<br>(舊<br>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br>(YESKEY) | 네이버인증서 | KB국민인증서 | 토스인증서 | 신한인증서 | 카카오인증서 |
|---|---|---|---|---|---|---|---|
|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br>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O | O | O | O | O | O | O |

* 단, 정확한 본인인증을 위하여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동구청 건축과-54702(2024.12.03.)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부산광역시 동구 건축과 2014-동구-도시환경시행인가-1호(2014.05.28.)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90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범일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신탁업자 겸 분양대금 관리자, 사업대행자 : ㈜한국토지신탁

※ 본 건축물은『신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한 토지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위탁자 "범일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수탁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2017.08.02일자로 체결한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되는 것입니다.

■ 시공사 : DL건설(주), DL이앤씨(주)

■ 분양대행사 : ㈜위드알앤씨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사업부지 14,861.1000㎡(오피스텔 : 1,202.9371㎡)
- 건축물 연면적 : 155,074.3670㎡(오피스텔 : 16,804.8128㎡)
- 건축물 층별 용도 : 지하 4층 ~ 지하 1층(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운동시설 등) / 지상 1층 ~ 지상 2층 판매시설 / 지상 3층 ~ 지상 15층 부대시설, 오피스텔 등 / 지상 2층 or 지상3층 ~ 지상 49층 공동주택
- 공급규모 : 지하 4층 ~ 지상 49층 4개동 중 104동 지상 3층 ~ 15층 오피스텔 총 224실
- 주차대수 : 1,133대 (오피스텔 134대)

■ 내진설계 등급 : 메르칼리 등급(Ⅶ-0.207g)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참조)

■ 입주예정일 : 2028년 06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통보)

■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

[단위 : ㎡]

| 군 | 타 입 | 공급호실(수) | 공급면적(㎡) | | | 기타 공용면적 | 계약면적 | 대지지분 |
|---|---|---|---|---|---|---|---|---|
| | |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소 계 | | | |
| 1 | 25A | 115 | 25.8950 | 22.0389 | 47.9339 | 22.2973 | 70.2312 | 5.0274 |
| 2 | 29A | 12 | 29.7900 | 25.3539 | 55.1439 | 25.6512 | 80.7951 | 5.7835 |
| | 29B | 12 | 29.3780 | 25.0032 | 54.3812 | 25.2964 | 79.6776 | 5.7036 |
| | 29C | 12 | 29.7350 | 25.3071 | 55.0421 | 25.6038 | 80.6459 | 5.7729 |
| | 29D | 12 | 29.8030 | 25.3650 | 55.1680 | 25.6624 | 80.8304 | 5.7861 |
| | 29E | 12 | 29.2710 | 24.9122 | 54.1832 | 25.2043 | 79.3875 | 5.6828 |
| | 29F | 24 | 29.3810 | 25.0058 | 54.3868 | 25.2990 | 79.6858 | 5.7041 |
| | 29G | 13 | 29.7170 | 25.2918 | 55.0088 | 25.5883 | 80.5971 | 5.7694 |
| | 29H | 12 | 29.2500 | 24.8943 | 54.1443 | 25.1861 | 79.3304 | 5.6787 |

■ **공통사항**

- 상기 실별 대지지분은 오피스텔 총 대지지분율을 면적을 타입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적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실별 대지지분은 오피스텔 총 대지지분을 타입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기재하였습니다.)
- 호실 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대지 확정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견본주택, 단지 배치,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조경면적 등), 각종 인쇄물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실별 면적은 최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2024.04.26.) 기준 면적으로 품질 개선, 인허가 사항 반영 및 예정지 좌표 측량 결과 등에 따라 설계 변경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VAT포함 ]

| 군 | 타입 | 동/호 | 공급호실 | 층 | 공급금액 | | | | 계약금(10%) | 중도금(60%) | | | | | | 잔금(30%) |
|---|---|---|---|---|---|---|---|---|---|---|---|---|---|---|---|---|
| | | | | | 대지비 | 건물비 | 부가세 | 계 | 계약시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입주시 |
| | | | | | | | | | | 2025-07-27 | 2026-02-27 | 2026-07-27 | 2026-10-27 | 2027-04-27 | 2027-11-27 | |
| 1 | 25A | 104동 2~10호 | 7 | 3층 | 46,600,000 | 81,870,000 | 8,187,000 | 136,657,000 | 13,665,700 | 13,665,700 | 13,665,700 | 13,665,700 | 13,665,700 | 13,665,700 | 13,665,700 | 40,997,100 |
| | | | 27 | 4층~6층 | 47,770,000 | 83,920,000 | 8,392,000 | 140,082,000 | 14,008,200 | 14,008,200 | 14,008,200 | 14,008,200 | 14,008,200 | 14,008,200 | 14,008,200 | 42,024,600 |
| | | | 27 | 7층~9층 | 48,260,000 | 84,780,000 | 8,478,000 | 141,518,000 | 14,151,800 | 14,151,800 | 14,151,800 | 14,151,800 | 14,151,800 | 14,151,800 | 14,151,800 | 42,455,400 |
| | | | 27 | 10층~12층 | 49,490,000 | 86,950,000 | 8,695,000 | 145,135,000 | 14,513,500 | 14,513,500 | 14,513,500 | 14,513,500 | 14,513,500 | 14,513,500 | 14,513,500 | 43,540,500 |
| | | | 27 | 13층~15층 | 50,230,000 | 88,250,000 | 8,825,000 | 147,305,000 | 14,730,500 | 14,730,500 | 14,730,500 | 14,730,500 | 14,730,500 | 14,730,500 | 14,730,500 | 44,191,500 |
| 2 | 29A | 104동 11호 | 3 | 4층~6층 | 51,330,000 | 90,180,000 | 9,018,000 | 150,528,000 | 15,052,800 | 15,052,800 | 15,052,800 | 15,052,800 | 15,052,800 | 15,052,800 | 15,052,800 | 45,158,400 |
| | | | 3 | 7층~9층 | 51,860,000 | 91,100,000 | 9,110,000 | 152,070,000 | 15,207,000 | 15,207,000 | 15,207,000 | 15,207,000 | 15,207,000 | 15,207,000 | 15,207,000 | 45,621,000 |
| | | | 3 | 10층~12층 | 53,180,000 | 93,430,000 | 9,343,000 | 155,953,000 | 15,595,300 | 15,595,300 | 15,595,300 | 15,595,300 | 15,595,300 | 15,595,300 | 15,595,300 | 46,785,900 |
| | | | 3 | 13층~15층 | 53,970,000 | 94,820,000 | 9,482,000 | 158,272,000 | 15,827,200 | 15,827,200 | 15,827,200 | 15,827,200 | 15,827,200 | 15,827,200 | 15,827,200 | 47,481,600 |
| | 29B | 104동 12호 | 3 | 4층~6층 | 50,610,000 | 88,920,000 | 8,892,000 | 148,422,000 | 14,842,200 | 14,842,200 | 14,842,200 | 14,842,200 | 14,842,200 | 14,842,200 | 14,842,200 | 44,526,600 |
| | | | 3 | 7층~9층 | 51,140,000 | 89,840,000 | 8,984,000 | 149,964,000 | 14,996,400 | 14,996,400 | 14,996,400 | 14,996,400 | 14,996,400 | 14,996,400 | 14,996,400 | 44,989,200 |
| | | | 3 | 10층~12층 | 52,440,000 | 92,130,000 | 9,213,000 | 153,783,000 | 15,378,300 | 15,378,300 | 15,378,300 | 15,378,300 | 15,378,300 | 15,378,300 | 15,378,300 | 46,134,900 |
| | | | 3 | 13층~15층 | 53,230,000 | 93,510,000 | 9,351,000 | 156,091,000 | 15,609,100 | 15,609,100 | 15,609,100 | 15,609,100 | 15,609,100 | 15,609,100 | 15,609,100 | 46,827,300 |
| | 29C | 104동 13호 | 3 | 4층~6층 | 51,230,000 | 90,010,000 | 9,001,000 | 150,241,000 | 15,024,100 | 15,024,100 | 15,024,100 | 15,024,100 | 15,024,100 | 15,024,100 | 15,024,100 | 45,072,300 |
| | | | 3 | 7층~9층 | 51,760,000 | 90,940,000 | 9,094,000 | 151,794,000 | 15,179,400 | 15,179,400 | 15,179,400 | 15,179,400 | 15,179,400 | 15,179,400 | 15,179,400 | 45,538,200 |
| | | | 3 | 10층~12층 | 53,080,000 | 93,250,000 | 9,325,000 | 155,655,000 | 15,565,500 | 15,565,500 | 15,565,500 | 15,565,500 | 15,565,500 | 15,565,500 | 15,565,500 | 46,696,500 |
| | | | 3 | 13층~15층 | 53,870,000 | 94,640,000 | 9,464,000 | 157,974,000 | 15,797,400 | 15,797,400 | 15,797,400 | 15,797,400 | 15,797,400 | 15,797,400 | 15,797,400 | 47,392,200 |
| | 29D | 104동 14호 | 3 | 4층~6층 | 51,060,000 | 89,710,000 | 8,971,000 | 149,741,000 | 14,974,100 | 14,974,100 | 14,974,100 | 14,974,100 | 14,974,100 | 14,974,100 | 14,974,100 | 44,922,300 |
| | | | 3 | 7층~9층 | 51,590,000 | 90,640,000 | 9,064,000 | 151,294,000 | 15,129,400 | 15,129,400 | 15,129,400 | 15,129,400 | 15,129,400 | 15,129,400 | 15,129,400 | 45,388,200 |
| | | | 3 | 10층~12층 | 52,910,000 | 92,950,000 | 9,295,000 | 155,155,000 | 15,515,500 | 15,515,500 | 15,515,500 | 15,515,500 | 15,515,500 | 15,515,500 | 15,515,500 | 46,546,500 |
| | | | 3 | 13층~15층 | 53,690,000 | 94,330,000 | 9,433,000 | 157,453,000 | 15,745,300 | 15,745,300 | 15,745,300 | 15,745,300 | 15,745,300 | 15,745,300 | 15,745,300 | 47,235,900 |
| | 29E | 104동 15호 | 3 | 4층~6층 | 50,430,000 | 88,600,000 | 8,860,000 | 147,890,000 | 14,789,000 | 14,789,000 | 14,789,000 | 14,789,000 | 14,789,000 | 14,789,000 | 14,789,000 | 44,367,000 |
| | | | 3 | 7층~9층 | 50,950,000 | 89,520,000 | 8,952,000 | 149,422,000 | 14,942,200 | 14,942,200 | 14,942,200 | 14,942,200 | 14,942,200 | 14,942,200 | 14,942,200 | 44,826,600 |
| | | | 3 | 10층~12층 | 52,250,000 | 91,800,000 | 9,180,000 | 153,230,000 | 15,323,000 | 15,323,000 | 15,323,000 | 15,323,000 | 15,323,000 | 15,323,000 | 15,323,000 | 45,969,000 |
| | | | 3 | 13층~15층 | 53,030,000 | 93,170,000 | 9,317,000 | 155,517,000 | 15,551,700 | 15,551,700 | 15,551,700 | 15,551,700 | 15,551,700 | 15,551,700 | 15,551,700 | 46,655,100 |
| | 29F | 104동 16~17호 | 6 | 4층~6층 | 47,770,000 | 83,930,000 | 8,393,000 | 140,093,000 | 14,009,300 | 14,009,300 | 14,009,300 | 14,009,300 | 14,009,300 | 14,009,300 | 14,009,300 | 42,027,900 |
| | | | 6 | 7층~9층 | 48,260,000 | 84,790,000 | 8,479,000 | 141,529,000 | 14,152,900 | 14,152,900 | 14,152,900 | 14,152,900 | 14,152,900 | 14,152,900 | 14,152,900 | 42,458,700 |
| | | | 6 | 10층~12층 | 49,490,000 | 86,950,000 | 8,695,000 | 145,135,000 | 14,513,500 | 14,513,500 | 14,513,500 | 14,513,500 | 14,513,500 | 14,513,500 | 14,513,500 | 43,540,500 |
| | | | 6 | 13층~15층 | 50,230,000 | 88,250,000 | 8,825,000 | 147,305,000 | 14,730,500 | 14,730,500 | 14,730,500 | 14,730,500 | 14,730,500 | 14,730,500 | 14,730,500 | 44,191,500 |
| | 29G | 104동 1호 | 1 | 3층 | 49,950,000 | 87,750,000 | 8,775,000 | 146,475,000 | 14,647,500 | 14,647,500 | 14,647,500 | 14,647,500 | 14,647,500 | 14,647,500 | 14,647,500 | 43,942,500 |
| | | | 3 | 4층~6층 | 51,200,000 | 89,950,000 | 8,995,000 | 150,145,000 | 15,014,500 | 15,014,500 | 15,014,500 | 15,014,500 | 15,014,500 | 15,014,500 | 15,014,500 | 45,043,500 |
| | | | 3 | 7층~9층 | 51,730,000 | 90,880,000 | 9,088,000 | 151,698,000 | 15,169,800 | 15,169,800 | 15,169,800 | 15,169,800 | 15,169,800 | 15,169,800 | 15,169,800 | 45,509,400 |
| | | | 3 | 10층~12층 | 53,050,000 | 93,200,000 | 9,320,000 | 155,570,000 | 15,557,000 | 15,557,000 | 15,557,000 | 15,557,000 | 15,557,000 | 15,557,000 | 15,557,000 | 46,671,000 |
| | | | 3 | 13층~15층 | 53,840,000 | 94,590,000 | 9,459,000 | 157,889,000 | 15,788,900 | 15,788,900 | 15,788,900 | 15,788,900 | 15,788,900 | 15,788,900 | 15,788,900 | 47,366,700 |
| | 29H | 104동 18호 | 3 | 4층~6층 | 47,560,000 | 83,550,000 | 8,355,000 | 139,465,000 | 13,946,500 | 13,946,500 | 13,946,500 | 13,946,500 | 13,946,500 | 13,946,500 | 13,946,500 | 41,839,500 |
| | | | 3 | 7층~9층 | 48,050,000 | 84,410,000 | 8,441,000 | 140,901,000 | 14,090,100 | 14,090,100 | 14,090,100 | 14,090,100 | 14,090,100 | 14,090,100 | 14,090,100 | 42,270,300 |
| | | | 3 | 10층~12층 | 49,270,000 | 86,560,000 | 8,656,000 | 144,486,000 | 14,448,600 | 14,448,600 | 14,448,600 | 14,448,600 | 14,448,600 | 14,448,600 | 14,448,600 | 43,345,800 |
| | | | 3 | 13층~15층 | 50,010,000 | 87,860,000 | 8,786,000 | 146,656,000 | 14,665,600 | 14,665,600 | 14,665,600 | 14,665,600 | 14,665,600 | 14,665,600 | 14,665,600 | 43,996,800 |

- 본 오피스텔은 총 224실 9개 타입, 2군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본 공급금액은 타입, 향, 층별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되었으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미포함 금액이며, 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공급계약 및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납부기한 내에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 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제3호 기준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면적이 산정됩니다.
- 주차장은 총 1,133대(근린생활시설 44대, 오피스텔 134대, 공동주택 955대 포함)로 설계되었습니다. (법정 주차대수 1,008.10대)
- 전체 오피스텔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체공용면적(기계실, 전기실, 방재실, 관리사무실 등)은 실별 전용면적의 합계 비율에 따라 오피스텔의 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 상기 호실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공용면적(기계실, 전기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지하주차장 및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공급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오피스텔,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복합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건축물로 시설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시설별 대지지분을 분할하였고, 오피스텔 각 호실별 대지지분은 오피스텔 전체 대지지분을 각 호실별 전용면적비율로 분할하였습니다.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며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분양홍보관(T.051-634-2001)으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지분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측량)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은「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에 납부합니다. 중도금은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사업자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 중 50%는 입주지정기간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승인일 이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의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법률의 변경, 금융시장의 변화,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수분양자는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실입주(키 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날)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104동 1층 오피스텔 전용 시설물(경비실, 실외기실 등)은 인허가 진행에 따라 위치이동 및 변경, 추가, 삭제등의 사업시행인가 변경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Ⅱ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초 모집광고일(2024.12.04.)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군별 1인당 1건, 총2건을 기준으로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동일군 내 2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고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 구 분 | 청약신청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
|---|---|---|---|---|
| **일 시** | 2024년 12월 9일(월) / 09:00~17:30 | 2024년 12월 12일(목) / 16:00 이후 | 2024년 12월 13일 (금) / 10:00~16:00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군별 무작위 결정** |
| **방 법** | 인터넷 청약 (09:00 ~ 17:30)<br>(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 청약Home 개별조회<br>(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분양홍보관 방문계약 | |
| **장 소**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 / - 스마트폰앱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 분양홍보관<br>(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506) |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통장 취급은행의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청약신청 안내**

| 구 분 | 내용 |
|---|---|
| **이용안내** |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
| **이용방법 및 절차** |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청약신청하기<br>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군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br>※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 구 분 | 청약신청금 | 내용 |
|---|---|---|
| **모든 군 공통** | **1,000,000원**<br>(금일백만원) |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br>•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청약통장 취급은행 전 지점)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구비사항</th></tr>
<tr><td rowspan="3">일반<br>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br>• 청약신청금<br>•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br>•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br>•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이후 발급여권제외) 등)<br>-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1통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1통<br>※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사업주체에서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 rowspan="2">제3자<br>대리신청 시<br>추가사항<br>(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br>-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br>-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br>-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r><td colspan="2">법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br>•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br>• 사업자등록증 1부<br>•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br>※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부(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1부(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1부)</td></tr>
</table>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분양홍보관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이 군별 2건이상 당첨된 경우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4.12.0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시행사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
  (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시행사 및 신탁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동·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일시 | 당첨자 발표 조회방법 |
|---|---|
| **2024년 12월 12일(목) 16:00이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당첨조회 →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당첨조회 메뉴에서 조회일 기준 최근 5일 이내 당첨발표한 단지에 한해 조회가 가능합니다.**<br>※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 | |
|---|---|
| **동.호실 결정방법** |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 신청한 군 내에서 타입, 동·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
| **기타사항** |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 **당첨자에 대한 안내사항**

| | |
|---|---|
| **당첨자 계약기간준수** | • 반드시 지정된 당첨자계약기간 내 분양대금납부계좌로 계약금납부 및 계약구비서류를 준비 후 계약장소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br>•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 시 관련법령에 의거 자격제한 없이 임의로 분양함<br>•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장소 미방문,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부정당첨 유의사항**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공제함. 또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 구 분 | 환불방법 |
|---|---|
| 환불대상 |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
| 환불기간 |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
| 인터넷 청약자 |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
| 은행(창구)청약자 |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 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됨<br>•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Ⅲ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 계약체결 기간 | 계약체결 시간 | 장 소 | 계약금 납부 |
|---|---|---|---|
| 2024년 12월 13일 (금) | 10:00~16:00 | 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 분양홍보관<br>(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506) |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시행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고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및 분양대금 납부계좌**

※ 분양자들께서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
| **분양대금 계좌** | **BNK부산은행** | 113-2018-4399-02 | ㈜한국토지신탁 김정선 | 입금 시 동,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br>(예 : "104동 303호" 당첨자 홍길동"<br>→1040303홍길동) |

- 분양대금,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는 서로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시행사 및 신탁사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호수 및 수분양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위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4동 303호" 홍길동 →1040303홍길동)

- 공급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 (오피스텔 분양대금 중 계약금, 중도금에 한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당첨된 동·층·호실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시행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점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 구 분 | 내 용 |
|---|---|
| **본인 계약시** | 1. 계약금(무통장 입금증/현금수납 불가)<br>2.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인터넷 청약시 생략 가능<br>3.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br>4.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본인발급용 /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br>5.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1통)<br>※ 외국인으로 계약체결을 위한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가능) |
| **법인 계약시** | 1. 계약금(무통장 입금증/현금수납 불가)<br>2. 청약신청 접수(영수)증<br>3.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br>4. 법인 인감도장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br>5.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br>6. 법인 등기부등본 1통<br>7. 법인 대표이사 본인 계약시 신분증<br>- 직원 및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br>(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1통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1통)<br>※ 외국법인일 경우 : 관련 법률상 토지취득 허가서 |
|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 3자 대리 신청(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이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br>1.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본인발급용)<br>2.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견본주택 내 양식 비치)<br>3.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및 인장<br>4. 계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 **공통 사항** | 1. 인지세 납부확인증(전자수입인지) : 1천만원 이하(면제)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 10억원 초과(35만원)<br>※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용)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 접속 후 구매 및 출력<br>※ 오피스텔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1/2씩 균등 부담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4.12.0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본인이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청약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비영리법인이 계약을 하고자하는 경우 상기 증명서류 외 별도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은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增減)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며, 그 내용을 분양 받는자 전원에게 알립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 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 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 및 계약은 취소하고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분양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후 부득이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해약하는 경우 공급계약서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및 주변 환경을 미리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미계약 호실에 대해 호수 및 면적, 공급금액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시설물의 변경과 오피스텔의 배치 구조 및 동 층 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인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외국인이 본 오피스텔을 계약할 경우「외국환거래규정」제9-42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등에 의거 계약자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미 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기, 설비, 상하수도, 중수, 경관조명, 가로등 등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추후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됩니다.
- 추후 분양사업자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호실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호실 관리비(전기, 수도 등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 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기타 관리비 및 주차장 운영, 부대 및 복리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을 준수합니다. 수분양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계약조건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합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오피스텔은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전체 분양대금의 60%인 중도금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 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합니다.)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분양홍보관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알선한 금융기관에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 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해당 납

부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는 최초 대출이자 발생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최초 입주개시일 전일까지는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이후부터는 계약자의 실제입주일과 관계없이 계약자가 중도금 이자를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분양권 전매, 상속, 증여 등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될 당시 중간 정산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대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지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완납되지 않을 경우, 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출 은행과 체결한 중도금 체결협약 등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의 계약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중도금 대출신청 관련 안내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지연신청" 또는 "금융거래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따른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시장상황에 따라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사업주체 또는 해당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중도금 대출은행이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시행사와 금융기관간 협의내용에 따라 만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만기연장의 의무가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와 금융기관간 사전 협의한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일정 시점 이후 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 승계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보증에 의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알선된 경우 계약자가 대출금융기관에 대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의 여신거래약정 위반, 기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금융 기관이 사업주체에게 보증채무의 이행 또는 대위 변제를 요구하여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였더라도 보증서 발급 불가, 대출한도 부족, 신용상의 문제 등 대출 결격사유가 발생(또는 발견될)할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기간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까지 사업주체가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분양광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분양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IV 선택품목 안내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오피스텔 분양계약과 별개로 시공사 디엘건설 주식회사가 입주대상자와 계약합니다.**

### ■ 마감재 특화

[단위:원, VAT포함]

| 품 목 | 타 입 | 설치위치 | 구 성 품 | 공급금액 | 비 고 |
|---|---|---|---|---|---|
| 거실 마감<br>(시그니월 / 가구마감) | 25A | 실 일부면 | 시그니월 + 가구패널(2면) | 650,000 | 차감 : 기본제공 도배마감 |
| | 29A | | 시그니월(1면) | 550,000 | |
| | 29B | | 시그니월(2면) | 760,000 | |
| | 29C | | 시그니월(2면) | 880,000 | |
| | 29D | | 시그니월(2면) | 900,000 | |
| | 29E | | 시그니월(2면) | 750,000 | |
| | 29F | | 시그니월 + 가구패널(2면) | 880,000 | |
| | 29G | | 시그니월(3면) | 1,050,000 | |
| | 29H | | 시그니월 + 가구패널(2면) | 960,000 | |

- 실 벽체마감 옵션은 단위호실별로 아래와 같이 맞춤 구성된 세트로만 판매하며, 마감의 조합 및 설치위치에 대한 개별선택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 25A TYPE (2면) : 시그니월 + 가구패널
  - 29A TYPE (1면) : 시그니월
  - 29B TYPE (2면) : 시그니월
  - 29C TYPE (2면) : 시그니월
  - 29D TYPE (2면) : 시그니월
  - 29E TYPE (2면) : 시그니월
  - 29F TYPE (2면) : 시그니월 + 가구패널
  - 29G TYPE (3면) : 시그니월
  - 29H TYPE (2면) : 시그니월 + 가구패널
- 실 벽체마감 옵션 미선택시 해당 부위는 도배지(걸레받이 설치)로 마감됩니다.
- 실 벽체마감 옵션 선택시 판매가격은 기본제공(도배마감) 품목과의 차인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실 벽체마감 옵션 선택시 마감두께 변경으로 옵션 미선택 세대(도배지 마감)에 비해 거실 내폭 실사용 칫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패널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벽체마감 옵션 선택시 마감자재(시그니월/가구패널 등)에 의한 나누기, 상세도 변경으로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통신수구 등)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빌트인 가전

[단위:원, VAT포함]

| 품 목 | 타 입 | 제조사 | 모 델 명 | 공급금액 | 비 고 |
|---|---|---|---|---|---|
| 인덕션 | 전타입 | SK매직 | 인덕션 2구 (IHR-B200E) | 100,000 | 차감 : 기본제공<br>LG전자 하이라이트 2구(BER2G) |

- 빌트인 가전은 제품의 단종, 변경, 성능향상 등 제조사의 사정으로 인해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덕션 옵션 선택 시 판매가격은 기본제공 품목(하이라이트 2구)과의 차인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 조명

[단위:원, VAT포함]

| 품 목 | 타 입 | 설치위치 | 구 성 품 | 공급금액 | 비 고 |
|---|---|---|---|---|---|
| 색온도 디밍시스템 | 25A, 29A | 실 | 색온도 디밍시스템 | 110,000 | 차감 : 기본제공 직부등 + 스위치 |
| | 29B~29H | | | 125,000 | |
| 주방가구 상부장 조명 | 25A | 주방 | 주방가구 상부장 LED 지판 조명 | 390,000 | 전기배선 및 스위치 설치비용 포함 |
| | 29A | | | 420,000 | |
| | 29B | | | 470,000 | |
| | 29C | | | 460,000 | |
| | 29D | | | 490,000 | |
| | 29E | | | 590,000 | |
| | 29F | | | 650,000 | |
| | 29G | | | 440,000 | |
| | 29H | | | 570,000 | |

- 색온도 디밍시스템은 조명의 밝기와 색온도(전구색 ~ 주광색)를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추후 조명기구 및 스위치 교체시 기능의 제한이 발생합니다.
- 색온도 디밍시스템 판매가격은 기존 실의 직부등 및 스위치와 관련된 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주방가구 상부장 조명 옵션 선택 시 상부장에 별도 스위치(ON/OFF)가 설치되며, 조명용 배전반 설치로 인해 해당 부분 주방 상부장의 수납 레이아웃이 변경되거나 수납 공간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상부장 조명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조명 및 스위치는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욕실 특화

[단위:원, VAT포함]

| 품 목 | 타 입 | 설치위치 | 구 성 품 | 공급금액 | 비 고 | |
|---|---|---|---|---|---|---|
| 욕실 특화 | 전타입 | 욕실 | 비데일체형 양변기(대림B&CO : DST 660) + 욕실 복합 환풍기 + 욕실 조명특화 | 1,100,000 | 차감 : 기본제공 욕실 투피스형 양변기 + 분리형 비데 + 환기디퓨저/배기팬 + 다운라이트 1개소 | 택1 |
| | | | 비데일체형 양변기(노비타 : Innocence) + 욕실 복합 환풍기 + 욕실 조명특화 | 1,500,000 | | |

- 욕실 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옵션 선택이 불가하며, 세트 상품(비데 일체형 양변기+복합 환풍기+욕실 조명특화)으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들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특화 옵션 미선택시 기본제공(투피스형 양변기 + 분리형 비데 + 환기 디퓨저/배기팬 + 다운라이트 1개소) 품목이 설치됩니다.
- 욕실 특화 옵션 선택 시 욕실 배기팬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합 환풍기 내 욕실팬 기능 있음)
- 욕실 특화 옵션 미선택 시 욕실 안쪽에 환기 디퓨져와 천정 내부에 배기휀이 설치되며, 디퓨져 위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특화 옵션 선택시 비데 일체형 양변기 컨트롤러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특화 옵션 선택시 복합 환풍기는 스위치와 연동되어 작동(ON/OFF)합니다. (기타 작동은 복합 환풍기 리모컨 사용)
- 복합 환풍기는 모드에 따른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복합 환풍기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천장 내부 설비, 등기구의 위치 등 시공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합 환풍기의 리모콘은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리모컨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특화 옵션 선택 시 센서 기능이 포함된 다운라이트가 욕실별로 1개소 설치되며, 센서 기능은 스위치 OFF시에만 심야 유도용 미등이 점등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욕실장 간접조명은 스위치를 통해서 제어하며 센서 기능은 없습니다.
- 욕실 특화 옵션 선택 시 판매가격은 기본제공 품목과의 차인액 및 추가 설치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욕실 특화 옵션 선택 시 복합 환풍기용 전원공급에 관련한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관련 유의사항**

- 모든 유상옵션 품목의 경우 사용에 따른 소음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전류의 에너지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 분양광고 시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비용은 오피스텔 분양가격과 별도로 계약서를 체결하며,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와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제반 자재, 공사관리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품목별 계약금이 상이하며, 계약 전 반드시 계약금 및 계약조건,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제품사양은 분양홍보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분양홍보관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에 관한 상세내용 중 본 분양광고문에 기재하지 못한 내용은 추후 추가선택품목 계약시 별도의 안내 후 계약 진행합니다.
- 제시된 제품은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이며, 분양홍보관에 일부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에는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전기설비 마감자재(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콘센트류, 스위치류 등)의 개수, 타입, 배치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동가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중도금 납부 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서비스 내용 및 제품에 대한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민원, 제품에 대한 하자 발생 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본 오피스텔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상세내용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입주자 선택사항으로 금액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시에는 기본 설계안대로 시공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단위호실에 전시(일부)되오며, 설치시 홈페이지 및 홍보물의 이미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라 인접하는 가구, 마감재, 벽체, 몰딩, 걸레받이, 커텐박스, 등기구, 스위치 및 콘센트 등의 설치 위치와 수량, 형태가 홈페이지 및 홍보물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벽체마감 등) 옵션 선택 시 나누기, 상세도 변경으로 인한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통신수구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 및 납부계좌**

|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 우리은행 | 1005-704-635918 | 디엘건설 주식회사 |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에 준합니다.
-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오피스텔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호수별 지정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층·호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계약 시 상기 계좌로 입금 후 입금증은 분양홍보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홍보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신용카드 결제 불가]

## V 기타 계약자안내

###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만 약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추후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전매에 대한 사 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인지세법」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을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재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납부금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 사업주체 부담액 | 1만원 | 2만원 | 3만 5천원 | 7만 5천원 | 17만 5천원 |
| 분양계약자 부담액 | 1만원 | 2만원 | 3만 5천원 | 7만 5천원 | 17만 5천원 |

- 해당 세대의 오피스텔 공급대금에 따른 인지세와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인지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입주예정일은 2028년 06월 예정입니다.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입주지정일 전에 함께 납부하셔야 입주가 가능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또는 시행사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출토,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행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의 입주시기와 공공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입점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0의2항에 따라, 분양받은 자의 사용승인 전 건축물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사전방문 미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사전점검은 없습니다.)

## VI 기타 유의사항

**(※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추후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일반사항**

- 본 분양광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분양홍보관은 승인된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시 사업부지의 일부 또는 전체가 합병·합필이 되어 지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입인지는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의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 수입인지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수 제출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 등)는 시행사 및 시공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오피스텔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점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조감도, 단위실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건축물의 색채, 형태(외벽 및 측벽 줄눈, 저층부 및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디자인, 옥상 및 옥탑 구조물, 단위실 및 부대시설 창호 크기 및 난간 형태 및 색상 포함),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심의(또는 자문) 법규의 변경 및 시공 과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옥상 및 옥탑 구조물의 경우 구조검토 등을 통해 재료 및 마감, 부재의 크기, 디자인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및 기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향후 변경사항은 고지 예정입니다.
- 단위호실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경미한 범위 내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탑승 위치 등) 등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지만, 인·허가 과정 및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입주민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발코니 확장 및 발코니 외창호 설치 등)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외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은 오피스텔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개정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주무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및 본 사업지 주변 여건에 따라 항공기, 도로교통, 지하철 등 철로운송수단 및 기타 건축물의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일조권 또는 조망권의 침해, 전자파, 전자기

장애,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지 않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의 개발계획은 향후 정부의 정책, 부산광역시, 동구구청 그리고 해당 사업관계자의 계획에 따라 변경 및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시공자 및 시행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으므로 추후 민원 제기 및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어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유의사항**
- 계약자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지정된 용도의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하여야 하되, 혐오시설 또는 주변에 방해가 되지 않는 업종으로 하여야 하며, 입주 시 및 입주 후의 업종 중복에 대해서는 계약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사업관계자는 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사업관계자에게 업종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각종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건축주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합니다.
- 당첨 및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관계자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관계자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관계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업관계자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는 입주지정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안내, 유의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가 분양계약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계약자가 분양계약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전국일간지에 분실공고를 내고 2주일 후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지참하고 분양홍보관을 방문하여 사업관계자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른 분실각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관계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 할 시에만 분양계약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분양계약서 재발급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층의 공유시설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분쟁 사항은 사업관계자와는 무관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호수는 공사 시공중에 샘플호수 및 현장사무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사업관계자의 협의 및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분양대행사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대행사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관계자의 결정에 따르며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변경 시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옵션선택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전기·통신 단자함 등의 설치위치 및 수량, 사양,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각종 기구(조명/배선기구/전기·통신함 등)의 설치위치 및 재질, 사양이 계약자에게 개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사업관계자의 승인없이 기 설치된 시설물의 이전, 변형, 손괴 등 기존의 형상을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광고(광고물) 및 분양홍보관 유의사항**
- 각종 광고 홍보물(분양홍보관, 리플렛, 전단, 분양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 조성계획은 각 사업관계자가 계획 및 추진예정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사업관계자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홍보물에 표시된 인근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관계기관의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충분히 인지한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분양광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의 위치는 분양홍보관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종 홍보물 및 분양홍보관에 표시, 설치된 시설의 색상 및 크기, 형태, 작동방법은 실 착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문프레임 규격 및 색상 및 형태, 외벽 마감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내 건립 타입은 업무시설(오피스텔) 25타입만 설치되며, 분양홍보관내 설치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분양홍보관에 비치되어 있는 타입별 설계도서, 공급안내문 및 모형, 카다로그 등을 필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미건립세대 CG는 계약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본 공사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건립세대 CG에 명기된 실 안목치

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단지 및 미건립 타입 모형은 계약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본 공사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건립 타입 모형에 명기된 실 안목치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문, 카달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CG(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등)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 인쇄물(카달로그 등)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및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분양홍보관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 시설물, 단위실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 및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배치도 및 평면도, 모형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본 공사 시 설치될 필요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건물의 명칭(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 BI, 색채 계획 등은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심의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설치 계획에 따라 단지 BI 설치 여부 및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분양광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분양홍보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관 내 건립타입, 주민공동시설, 카달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시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모형 및 분양 유인물 등에 표현된 오피스텔의 명칭 및 호수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현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쿨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맞게 설치됩니다.
- 분양홍보관은 분양 후 일정 기간 동안 공개 후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전한 뒤 관계 규정에 의거 회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층·호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분양홍보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샘플하우스 면적 및 높이는 실제 시공면적 및 높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분양 및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월패드, 조명기구,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정보통신인출구), 욕실폰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조명은 직부등 및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내 등기구 조도량[l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본 공사시 동등이상으로 적용됩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월패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일괄소등 포함), 욕실폰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계 유의사항 (단지 내·외부 관련사항)**

- 계약 전 분양홍보관을 방문하시어(사업시행인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비치) 단지 내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지 주출입구 외의 단지 내 보행자통로(단지 내 연결통로 포함)의 디자인(선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내부에 저압 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 지역 정압기 시설 부지(가로3mX세로4mX높이3m)이 설치되며 가스 정압기 설치장소, 면적 등은 가스공사와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 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 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고 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입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 세대는 매연, 소음(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로 인해 일부 인접한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진동 피해,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실외 어린이 놀이터, 휴게소, 쓰레기분리보관소, 주민공동시설, 산책로 등)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냄새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상부로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저수조 및 기계실, 음식물쓰레기 전용 기계실, 빗물저류조, 전기실, 발전기실 등 각종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설비 및 환기용 구조물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시설은 소방법에 근거하여 시스템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오배수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됩니다.
- 단지 특성상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분산 배치되어 실외기실이 주동출입구 및 보행자 통로,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붕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용 구조물과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녹지구간 내 조경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주동 지붕층 및 옥탑층, 부대복리시설 및 상가 지붕층에 조경공간(식재),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설비, 실외기,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반시설(도로, 인도 등)의 형태 및 마감 사양은 시공 중 인허가 관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및 단지 내외부 레벨차에 따른 경사로 및 계단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104동 1~2층 근린생활시설 장식외피, 전동 옥상구조물 등)의 디자인은 설계 또는 시공등의 사유로 설치위치, 범위, 크기, 색상, 디테일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튼월룩 디자인 적용시 일부 세대의 창호 설치 깊이가 분양홍보관과 상이 할 수 있으며, 눈부심 등의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4동 하부에는 방재실/MDF실과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여 저층부 세대의 경우, 실외기실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104동 옥탑층에는 오피스텔용 방송공동 수신설비 안테나가 설치 예정이며 설치 위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전용 엘리베이터 운행층은 지하1층에서 지상15층까지 운행됩니다.
- 104동 지하층에는 저수조, 기계실, 펌프실, 102/104동 사이에는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어 운전시 소음, 냄새, 진동, 매연발생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발생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각 동하부에는 배수를 위한 집수정이 설치되어 있으며, 장비류 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104동 근린생활시설 상부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는 현장여건 및 인허가권자 협의에 따라 위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102/104동 인근 지하층 발전기실에서 전기안전공사 년1회 및 관리사무소의 비정기적 발전기 시운전으로 D/A(환기구)를 통한 매연발생 및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4동 인근에 저수조 및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등의 급기/배기를 위한 D/A(환기구)가 지상에 설치되어 인접세대에 소음, 냄새, 진동, 매연발생 등의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실(발전기실 포함)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포함)로 분리운영되며, 방재실, MDF실 등의 중요실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됩니다.
- 단지 내 보안등 및 CCTV 위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사 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각 실 크기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창호크기, 위치, 재질, 외부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보관소의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보관소의 위치는 각 동 주변에 배치되며, 일부 세대 내부에서 쓰레기 분리보관소가 보일 수 있으니 위치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이송설비 수거시설 위치는 지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인허가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작업시 소음, 냄새 및 진동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수거시설 및 투입구는 공동주택을 위한 시설로서 오피스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단지 내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한 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며, 배출 및 점검 등의 사유로 소음 발생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오피스텔의 경우 옥외에 설치된 음식물처리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위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1층 주차장의 차로높이는 2.7m이고 택배차 진입이 가능하며, 지하 2층~지하 4층의 차로 높이는 2.3m이고 택배차량 진입은 불가합니다. 지하주차장 주차면은 2.1m 이상 높이로 계획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택배차량 출입을 위해 램프 및 주차장 통로의 유효높이는 2.7m(지하 1층만 해당)으로 시공이 되나, 유효높이 이상의 차량에 의한 훼손은 하자 책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 또는 계단실 등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가스정압기실이 단지내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에는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인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중계장치는「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및「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 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옥외안테나 설치 예정 위치 : 103동 인근 화단, 104동 인근 화단
  - 중계장치 설치 예정 위치 : 지하3층(PIT, 휀룸) / 지하1층(PIT 2개소) / 101동 지상25층(피난층) 휀룸(2개소) / 102동 지상25층(피난층) 휀룸(2개소) / 103동 지상25층(피난층) 휀룸(2개소) /104동 지상10층 통신실 및 지상 25층(피난층) 휀룸(2개소)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가 주출입구 레벨은 현장상황에 따라 계획 레벨이 변경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계단 및 램프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환기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일부 차단하는 청정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 2회 이상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하시는 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체 세대의 경우 대지의 녹지 공간 확보 및 거실 유리난간 설치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하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 후면 보차도를 이용시 관리사무소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 일부 지상부 주차장 계획 및 주차램프 위치로 인해 저층부 세대는 소음, 야간 빛공해로 인해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분양 카달로그나 모형을 통해 인지하여야 합니다.
- 주동 외벽 마감 하부는 석재이며, 그 외 마감은 수성페인트 도료로 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위치 및 통행 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주출입구는 필로티 또는 후면 진입이므로 각 동별 출입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아파트) 주출입구는 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포함)과 공동주택(아파트)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기실, 발전기실, 방재실, MDF실 등의 중요실은 용도별로 구분되어 설치됩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담장)는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도난이나 기물파손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4동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용으로 생산된 전기는 공동주택으로 공급되지 않으며, 설치장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지상층 및 인근에 근린생활시설과 부대시설용 실외기 공간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매연발생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발생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으로 심의위원회 협의내용으로 동천 개발(보행자전용도로 등)에 따라 일부 주차램프(램프1)가 폐쇄 등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입주자 주차 구역내 주차 시설(주차구획, 전기차 충전시설 등)은 근린생활시설 사용자와 공동으로 사용해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4동 오피스텔 하부에는 근린생활시설(1층~2층)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입점 업종에 따라 소음, 진동,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은 단지내 104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 101동, 103동 인접 주차구획을 이용할 경우 거리차이로 인해 사용상 불편이 있을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건물의 높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호수 내부 여건**

- 단위호실(현관, 욕실, 실외기실 제외)의 천장고는 2.3M이며, 본 공사 시 호실 내 천장 높이는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이후 현관중문을 개별적으로 설치 시 현관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화재감지기 미설치로 인해 현관 내 화재 감지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에어컨 사용 시 원활한 에어컨 동작을 위해 실외기실에 있는 그릴창 및 방충망을 열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호실 실외기실에는 냉방용 실외기 및 급탕, 난방용 보일러가 같이 설치 되며, 결로 및 동파의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기장비, 조명기구, 스위치, 온도조절기, 콘센트 등의 위치와 사양은 인허가 도서 및 분양홍보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환기장비의 경우 본 공사 시 제조사, 타입, 모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 높이는 물넘침 방지가 목적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 욕실장 후면에는 마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욕실의 배수구, 위생기구 등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내부 콘센트의 위치 및 사양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욕실, 실외기실 바닥의 타일 및 주방, 욕실 벽의 락패널 마감재는 나누기 및 이음부분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 내 설치된 각종 소품, 이동식 가구, 커텐, 블라인드, 벽패널 장식, 미술품, TV, 전기밥솥 등은 전시용품입니다.
- 내·외부 창호의 유리, 개폐 방향, 색상, 두께, 사이즈, 프레임 위치, 손잡이 등 제품 사양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창호에 설치된 유리도 분양홍보관용으로 본 공사시 창호 유리는 인허가 조건에 적합한 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본 공사 시 인허가 조건에 의해 공용부에 소방관 진입창이 설치됩니다.
- 각 호실당 배연창이 1개소씩 외기창호에 설치됩니다. 배연창은 화재시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이며, 설치 위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에 설치되는 배연창은 배연설비 설치공간을 고려하여 사이즈 및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에 설치되는 외부창호 외부면은 1면 착색프레임이 설치되고, 내부면은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 상판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음부분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오피스텔은 하이라이트 쿡탑(추가선택품목 인덕션 포함)이 기본을 제공되어 도시가스 사용이 제한(주방 가스 배관 및 차단기 미설치)되므로, 추후에도 가스쿡탑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빌트인 가전, 붙박이장의 노출되지 않는 천장 및 바닥, 후면 및 측면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현관 신발장 하부장에 급수분배기함이 설치되어, 수납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방 싱크볼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됩니다. 아울러 싱크볼 하부장 사용시 온수분배기 및 세탁기 배수구로 인해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실 천장에 전열교환기가 노출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타입별로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기 필터(헤파필터)는 연 1회~2회 교체를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주기는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호실에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상이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시 호실내 화장실의 천장 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분양홍보관 및 도면상의 치수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 현관문 열림 방향은 동일 타입이라도 피난 방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목창호의 하드웨어(손잡이, 경첩, 스토퍼, 손끼임 방지 장치 등)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샤워칸막이 하드웨어(손잡이, 유리, 하드웨어 등)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내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 스톤, 타일, 현관 및 실 시그니웰, 시트 패널 등의 마감재는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 변경으로 인해 단위호실 전기분전함, 통신단자함이 실에 매입(커버노출) 시공되며 위치와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커텐박스 위치, 깊이,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 실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위호실 환기장비 및 직배기 배관공간 확보로 인해 폭 및 깊이가 분양홍보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단위호실의 조명기구, 전기분전반 및 통신단자함, 월패드, 콘센트 및 스위치, 소방시설 및 배선기구류 등의 위치와 사양 및 수량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내 설치되는 기기 사양, 위치, 수량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의 주방에는 별도의 주방 식탁용 팬던트 조명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호실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호실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 내 설비배관 및 장비,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 내 냉·난방, 급수·급탕 제어 및 차단을 위한 설비는 실 천정 내부 또는 가구 하부장에 매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공간상의 제약, 가구 등의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 호실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 내 조명기구, 배선기구류, 월패드, 통신단자함 및 전기분전함 등의 설치 위치 및 수량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마감재, 가전, 조명, 욕실상품 등)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시 단위호실 실외기실, 욕실(샤워부스 포함), 현관 등의 단차는 분양홍보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적용될 현관 디딤석은 엔지니어드 스톤의 특성상 무늬, 색깔 등이 분양홍보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시공 편의성을 위해 분절 시공됩니다.
- 실 및 주방/식당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시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 단위호실내 설치되는 인조대리석류(주방상판, 욕실선반), 엔지니어드 스톤류(현관디딤판), 타일류(현관, 욕실, 실외기실 바닥 등)는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자처리에 대한 보수 등 해당 자재 교체시 기존 시공 마감재와 색상 및 패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최하층 단위호실 및 최상층 단위호실, 기준층 세대간 천장속 공간이 상이할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 천장의 깊이와 크기는 본 공사시 각종 설비배관 및 덕트, 등기구 설치 등으로 인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각종 패널류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할 수 있습니다.
- 목창호, 가구 등에 설치되는 문선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일부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 현관, 실외기실 바닥의 타일은 줄눈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 욕실에 설치되는 샤워부스는 접합유리로 시공되며, 본 공사 시 협력업체 계약관계에 따라 디자인 및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별 현관 부위에 설치된 일괄소등 스위치의 성능 개선을 위해 구성 및 디자인의 일부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 욕실도어 하부에 설치되는 인조대리석 도어씰은 본 공사 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 현관 방화문은 본공사시 방화성능 향상 및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목창호 문틀 및 가구등에 타커핀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등 수납공간의 크기, 위치, 구성은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호실내 도어 하드웨어(경첩, 손잡이, 스토퍼 등)는 본 공사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분양홍보관과 다르게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끼임 방지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창호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에 설치되는 온수분배기는 본공사 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온수분배기 및 세탁기 배수구 설치로 인해 해당부분 주방가구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 단위호실내 실, 욕실 등에 설치된 환기 디퓨져는 본 공사시 위치와 개소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에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됩니다. 아울러 자동식 소화기 조작부가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 내에 설치된 콘센트는 법적 설치기준에 의거 일부 콘센트의 2구 중 1구가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로 제공됩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환기디퓨져, 조명기구, 콘센트, 배수구, 위생기구, 수전, 악세사리류 등의 위치와 사양은 본 공사시 분양홍보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경우 최초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 시공이 되며, 이후에는 배선, 배관 등 관련 설비공사에 따라 선택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단위호실 내부 전기, 설비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부착형 콘센트의 수량/위치 및 사양과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장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분양홍보관과 다르게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시 기본으로 제공하는 천정형 에어컨, 빌트인 콤비냉장고, 빌트인 세탁기, 렌지후드, 하이라이트 쿡탑은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상품의 조합 및 모델, 디자인, 색상에 대한 개별선택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단위호실 내 벽체에는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 등의 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므로(보통 수직 형성) 못질 또는 브라켓 고정 등 벽체 파손을 지양해야 하며, 벽체 및 배관 파손시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 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빨래 건조대 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호실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 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단열공사 외 환기 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당사의 책임이 없음)
- 단위호실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벽체 구조를 확인하고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하시기 바라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전문 업체를 통해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호실 내 목재문, 가구 및 시그니월, 시트 패널 등의 인테리어 시트는 자재 특성상 색감 및 문양이 분양홍보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기기의 전화 통화 기능은 일반 유선전화 가입시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전화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시 전기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타입별로 위치가 상이하며, 커버 노출에 따른 미관 저해 및 벽두께 변경이 수반될 수 있으며, 가구 배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치 위치는 분양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호실의 공기질센서의 위치와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단위호실에 설치되는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환기디퓨져, 공기질센서,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와 사양, 설치 개소는 인허가 도서 및 분양홍보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개별 소유하고 있는 대용량 가전기기 사용 시 호실 전기 용량 및 차단기 용량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전기관련 공사를 해야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본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품목별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에 한계가 있고, 분양홍보관 건립호실에 전품목 전시불가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 분양홍보관에서 상세한 설명과 확인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단위호실에 전시(일부)되오며, 설치 시 홈페이지 및 홍보물의 이미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콘센트, 스위치, 월패드, 욕실폰  등의 제품은 기능과 미관 향상을 위해 색상, 디자인, 버튼 구성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단위호실 VR 및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호실 VR에 표현되지 않은 각종 배선 기구류(스위치, 온도조절기, 콘센트 등) 및 설비 배관류(입상배관, 수전 등), 전기분전함, 통신단자함, 각종 점검구 등은 분양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호실 내 설치된 배연창은 소방법령에 따라 설치되며 배연창으로 설치된 창호는 평상시 환기를 위한 개폐가 불가하거나 개폐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배연창의 개폐기로 인하여 배연창의 커튼박스는 본 공사시 길이 및 형태가 다소 축소 또는 확대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커튼 또는 브라인드 등 설치시 개폐기와의 간섭으로 설치가 어렵거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또는 인접 호실의 보일러, 실외기 등 기계설비 가동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됨에 따라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할수 없습니다.
- 호실 내 설치되는 천정형 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 입니다.
- 스마트홈 서비스를 위한 고정IP는 준공후 4개월간 무상제공되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간사업자로부터 고정IP를 유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관계없이 전기분전반내 예비차단기가 설치됩니다. 다만 입주자가 개별 설치하는 품목에 대한 전기 배관, 배선은 직접 공사해야 합니다.
- 저층부(필로티 포함) 2개층 호실 및 오피스텔 최상층 일부 호실은 호실 내 방범을 위하여 창측에 방범용 동체 감지기가 설치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주민공동시설은 각각 분리되며, 세부운영방안은 추후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합니다.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 피트니스, GX룸, 라커/샤워실, 화장실, 작은도서관(라운지카페), 경로당 (101동) 어린이집, 관리사무소(102동) - 지상1층 위치 / 실내스크린 골프연습장(101동) – 지하1층 위치
  - 오피스텔 주민공동시설 : 관리사무소(104동) - 지상1층 위치 / 피트니스, GX룸, 주민카페, 화장실(104동) – 지상3층 위치
- 104동 지상3층 오피스텔 주민공동시설로 인하여 인접호실에서는 소음 및 미세한 진동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각각 구분하여 설치됩니다. 단, 위치는 인허가 진행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은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오피스텔 입주자는 오피스텔용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해야하며, 공동주택용 충전기와 서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 차량출입통제설비는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으로 분리되어 설치되며 서로 연동되지 않아 오피스텔 입주자는 공동주택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추후 주차구역 구분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위치인식 설비는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으로 분리되어 설치되며 서로 연동되지 않아 오피스텔 입주자가 공동주택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 위치확인은 불가능 합니다.
- 지하주차장 내 주차차단기는 각 시설별 주차 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며,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 구역에는 오피스텔 입주자 및 근린생활시설 사용자만 주차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주차 구역 외 주차 시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1층 주차장에 설치되는 주차차단기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포함)의 각 시설별 주차 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주차차단기는 평상시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상시에만 사용됩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 및 진출입을 위한 경사로(램프)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며, 해당 주차 및 진출입을 위한 경사로(램프) 차량 혼재로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경사로의 기울기 및 위치는 인허가 진행시 관련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로의 너비는 6m 이상(공동주택 하부 통과부위 제외),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3m 이상, 주차면은 2.1m 이상입니다.
-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시설물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환경권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계획승인)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문주, 외벽색채, 줄눈디자인,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지붕의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으며, 문주의 위치는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법에 따라 위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해당 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전기 및 기계 설비와 관련한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됩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일부 공간에 회차 공간이 없어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하향식피난구는 공용 복도에 2개소 계획되어 해당층에서 피난시 사용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관련법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입니다.
- 오피스텔 공용 복도에 소방관진입창이 설치되며, 위치 및 크기는 본공사시 관련법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입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은 오피스텔은 완속충전기 2개소, 이동형 충전기용 콘센트(과금형) 9개소가 설치되며 수량 및 설치장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인택배 시스템은 호실수의 약 15%가 지하주차장 내 설치됩니다. (지하1층 예정, 냉동, 냉장함 제외)
-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는 기계실 없는 타입으로 운행속도는 90m/min이 설치되며, 승강기 운행 시 인접세대에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최상층은 승강기 제어반,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및시행령」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의한 과태료 부과/민원(각종 분쟁 등)은 당사와 관련이 없으며, 이에 대 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내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전기, 통신용 배관 및 트레이가 노출되어 시공되며, 지하주차장 내 공용공간을 공유하여 설치되므로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인택배 시스템은 관리사무소 내부 서버로 운영됩니다. 향후 원격관리 시스템(관제센타 통화, 문자발송, 카드결제 등)으로 운영할 경우 입주자 부담으로 서비스 비용 및 기간사업자로부터 고정IP를 유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 복도 및 호실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 부동산개발업 등록자 : ㈜한국토지신탁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역삼동)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 080010**

- 사업방식 : 분양형 토지신탁
- 공급대상물의 소재지·지목·용도·규모

① 소재지 : 부산광역시 범일2동 830-90번지 일원
② 지 목 : 대
③ 용 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공동주택
④ 규 모 : 지하 4층 ~ 지상 최고 49층 4개동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일반상업지구, 방화지구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육환경보호구역 : 상대보호구역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 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완납 시 개별등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의거 이전고시 이후 보존등기 완료 후 소유권 이전 예정)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절차는「건설산업기본법」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원, VAT별도]

| 구 분 | 건축감리 | 전기감리 | 소방감리 | 정보통신감리 |
|---|---|---|---|---|
| 회사명 | ㈜길종합건축사사무소 | ㈜태양이엔시 | ㈜건축사사무소케이아이씨 | ㈜건축사사무소케이아이씨 |
| 감리금액 | 3,295,207,000 | 982,989,091 | 595,000,000 | 185,000,000 |

※ 상기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사업관계자 및 시공회사**

| 구 분 | 사업시행자 | 사업대행자 | 시공사 | | 분양대행사 |
|---|---|---|---|---|---|
| 상 호 | 범일3구역<br>재개발정비사업조합 | ㈜한국토지신탁 | DL건설㈜ | DL이앤씨㈜ | ㈜위드알앤씨 |
| 사업자등록번호 | 605-82-12613 | 120-81-63986 | 102-81-34561 | 676-87-01904 | 607-81-84528 |

■ **보증관련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오피스텔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제01282024-104-0002400호 | 22,951,812,100원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br>(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해당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분양광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분양광고】「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5조 및 제6조에 적법한 분양광고를 말합니다.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광고에서 정한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또는 오피스텔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전까지 잔금중 50퍼센트 이내에서 납부한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주택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건축물분양법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실행공정률 및 예정공정률은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의 전부에 대한 공정률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분양신고필증 발급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 또는 해당 사업장의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오피스텔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사업주체는 보증사고(조합사업비대출보증약관 또는 분양보증약관에 따른 보증사고를 말함)가 발생할 경우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홈페이지 : www.dlcon-apt.co.kr/danji/91XAW1/index.html#/**

**■ 분양홍보관 및 현장위치 : 부산광역시 중앙대로 506 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 분양홍보관**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 분양홍보관 (051-634-20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